

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20. 3. 13.

□ 개정 : 2020. 11. 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교육혁신원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역량기반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조사 및 결정
2.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
3. 전공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